



신규 이민자 복지 수당의 수급 대기 기간

신규 이민자들의 일부 호주 복지 수당 수급에 대한 대기 기간이 변경된다.

2019년 1월 1일부터 영주권을 취득한 이민자들의 대부분은 일부 복지 수당이나 할인혜택 카드를 받기 이전에 해당 기간 기다릴 것이 요구된다.

이민 희망자들은 영주 비자로 호주에 오기 이전에 미리 충분한 생활 자금을 확보해 두어야 한다.

복지 수당과 할인혜택 카드를 받는데 대기 기간이 적용되지 않는 이민자의 경우도 있으나, 이는 특정 종류의 비자 소지자와 상당한 상황변화를 겪은 사람들에게 해당된다.

대기 기간 4년 적용 지원금:

- 뉴스타트 지원 수당 (Newstart Allowance)
- 청년 지원 수당 (Youth Allowance)
- 오스터디 학생 수당 (Austudy)
- 육아 수당 (Parenting Payment)
- 이동 지원 수당 (Mobility Allowance)
- 상병 지원 수당 (Sickness Allowance)
- 상조 지원 수당 (Bereavement Allowance)
- 특별 수당 (Special Benefit)
- 기초수급자 교육 보조금 (Pensioner Education Supplement)
- 농가정 지원 수당 (Farm Household Allowance)
- 저소득자 의료 헬스케어 카드 (Low Income Health Care Card)
- 연방정부 노인 의료 헬스 카드 (Commonwealth Seniors Health Card).

대기 기간 2년 적용 지원금:

- 육아 휴직 수당 (Parental Leave Pay)
- 아버지/배우자 수당 (Dad and Partner Pay)
- 간병인 수당 (Carer Payment).

대기 기간 1년 적용 지원금:

- 간병인 지원 수당 (Carer Allowance)
- 가족 수당 A (Family Tax Benefit Part A).

가족 수당 B (Family Tax Benefit Part B)는 대기 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 한부모 가정을 포함하여 가족 중 1인의 수입으로만 생활하는 신규 영주 이민 가정은 수급자격이 확인되면 즉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해당 변경 대상은?

새 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영주 비자를 받는 기술이민과 가족이민자에게 해당된다.

2019년 1월 1일에서 2019년 6월 30일 사이에 태어난 아기가 있는 이민자는 수급 조건을 충족시키는 경우 종전과 같이 그 아기를 위한 육아 휴직 수당과 아버지/배우자 수당을 받을 수 있다.

2019년 1월 1일 이전에 영주권 비자를 받은 사람들에게는 종전의 규정이 적용되어, 적격한 경우 가족 수당 A, 육아 휴직 수당, 아버지/배우자 수당, 간병인 지원 수당을 즉시 받을 수 있고, 대부분의 다른 지원금 수급에 2년의 대기 기간이 적용된다.

또한 일부 특정 비자 종류를 소지한 이민자들에게는 2019년 1월 1일 이후에 비자를 취득한 경우라도 종전의 규정이 해당될 수 있다. 이러한 비자 소지자는 비자 종류에 따라 적격한 경우 가족 수당 A, 육아 휴직 수당, 아버지/배우자 수당, 간병인 지원 수당을 즉시 받을 수 있으나, 대부분의 다른 지원금 수급에는 2년의 대기 기간이 적용된다. 이 경우에 해당되는 비자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뉴질랜드 시민 특종 비자 (444 비자)
- 고아의 친척 비자 (117 비자, 837 비자)
- 잔류 친지 비자 (115 비자, 835 비자).

대기 기간 면제

어떤 이민자들은 적격한 경우 일부 혹은 전체 지원금 수급 이전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되거나 짧은 기간의 대기만이 요구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면제'라고 한다.

인도주의 비자로 호주에 입국하는 사람과 그 가족은 모든 지원금의 대기 기간이 면제된다.

영주권 비자를 받은 후 한부모 가장이 된 이민자는 육아 수당이나 뉴스타트 지원 수당 등의 지원금에 해당되는 대기 기간을 면제받을 수 있다. 기타 다른 이민자들 중에도 대기 기간 동안 고도의 상황변화를 겪는 경우와 재정적인 곤란을 겪는 사람들은 특별 수당의 대기 기간이 면제된다. 또 이런 면제를 받는 사람이 부양 자녀가 있는 경우에 가족 수당의 대기 기간도 면제된다.

복지서비스부 (Department of Human Services)에 연락하면 대기 기간 면제 여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을 알아볼 수 있다.

기타 지원사항

신규 이민자들은 대기 기간중이라도 메디케어 등 의료보건 서비스 및 기타 정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적절한 경우 어린이집 이용비 보조도 가능하다.

기타

www.humanservices.gov.au/newresidentswaiting 방문

한국어 정보:

- 131 202번의 복지서비스부의 다언어 서비스로 전화
- www.humanservices.gov.au/yourlanguage 방문